

(부의안전내역 및 요약서-참조2)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

연 번	안 건 명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1	○ 성남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위 원 회
2	○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지식산업과	경제환경 위 원 회
3	○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
4	○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회계과	"
5	○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소행정과	"
6	○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7	○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8	○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9	○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원과	"
10	○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구청 (총무과)	"
11	○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택과	도시건설 위 원 회
12	○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관리보상과	"
13	○ 공원으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의 건(박유신 등 172명, 소개 : 윤창근 의원)	도 로 과	"
14	○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	각상임위원회
15	○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체육청소년과	본회의장
16	○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의회사무국	"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 조정 및 신설 ○ 빌라 명칭변경과 지번 합병, 지번정정 및 관할 구역 조정 ☐ 주요골자 ○ 수정구 신흥1동·신흥2동·태평2동, 중원구 상대원3동, 분당구 이매1동·금곡2동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변경(별표) • 신흥 1동 : 23통 119반 ⇒ 23통 121반(2개반 증가) • 신흥 2동 : 38통 205반 ⇒ 38통 205반(증가없음) • 태평 2동 : 23통 135반 ⇒ 23통 135반(증가없음) • 상대원3동 : 19통 118반 ⇒ 19통 117반(1개반 감소) • 이매 1동 : 31통 218반 ⇒ 31통 218반(증가없음) • 금곡 2동 : 33통 216반 ⇒ 33통 217반(1개반 증가) ※ 시전체 1,167통 7,039반 ⇒ 1,167통 7,041반으로 2반 증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위 원 회
2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등 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와 성남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첨단산업,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항 추가 ☐ 주요골자 가.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범위(제2조) • 지식기반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	지식산업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 「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 관련 서비스 산업 - 「영상진흥 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상물 관련 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시장이 선정한 전략산업 • 벤처기업 나. 육성 및 지원사업(제3조) •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유치 •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과 협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 중소·벤처기업 애로기술 지원 사업 • 중앙정부 또는 도지사, 시장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 다. 주요 지원 내용 • 시설물의 설치 및 선정(제4조) • 공유재산 지원(제5조) • 마케팅 및 수출지원(제6조) 등		
3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 10. 4 개정·공포되어 관련 수수료를 법령에 따라 조정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개정(도사무위임) 및 등록체육시설 관련 업무(도사무위임)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	세정과	경제환경위원회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4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의결안	○ 전국적 통일안과 업무처리가 동일한 타 수수료 통일안과 불균형 하여 조정하고 중복된 수수료는 폐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등록제→허가제) 으로 수수료 명칭을 변경 □ 주요골자 ○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상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1종 조정 · 신설 ○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수수료 18종 신설 ○ 통일안과 관련 업무 수수료 8종 조정 및 폐지 ○ 수수료 명칭 변경 2종 등 39종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임(안 제3조 별표1) □ 제안이유 ○ 취득(건물) 1) 성남시 의료원 건립 • 우리시 52만 주민이 거주하는 수정 · 중원구 지역에 소재하던 종합병원 2개소(813병상)가 경영악화 등으로 2003년 각각 폐업됨에 따라, 동 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시의회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현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성남시 의료원을 건립코자 함.	회계과	경제환경 위 원 회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2) 장례식장 건립 •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122번지 일원의 제2 추모의집(봉안시설)신축사업 과 연계하여 제2추모의 집(봉안시설)신축부지 일부에 • 지상 2층(건축연면적 1,500㎡) 규모에 빈소 5, 영결식장, 입관실, 조리장 건립과 주차장 100면, 조경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의 •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기존 화장장 및 봉안 시설과 함께 양질의 종합장사시설을 우리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함. ○ 처분(토지, 건물) 1)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 일반상업지역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태평동 3409-2,3 287㎡)하고 있는 사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재산과 •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폐도·폐구거 또는 사유지 경계안에 있는 사유지를 (서현동 185-1 90㎡, 상대원동 2050 65.5㎡, 상대원동 513-19 75㎡)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대체재산을 확보하고자 함 2) 성남시 청사 및 시민회관 건물 철거 (멸실) • 시의회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현 태평동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성남시 의료원을 건립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 우리시가 현 시청사 부지에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 부지에 존치한 시청사 건물(철골주차장 포함) 및 시민회관 건물을 철거 멸실코자 함 □ 주요골자 ○ 취 득(건물) 1) 성남시 의료원 건립 • 건 물 1건 78,540㎡ 161,202,585천원 - 성남시의료원 건립 (태평동 청백리길 10번지) 1건 78,540㎡ 161,202,585천원 2) 장례식장 건립 • 건 물 1건 1,500㎡ 5,300,000천원 - 장례식장 건립 (갈현동 122번지 일원) 1건 1,500㎡ 5,300,000천원 ○ 처 분(토지, 건물) 1)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 토 지 4건 517.5㎡ 2,644,510천원 - 태평동 3409-2외 4필지 4건 517.5㎡ 2,644,510천원 2) 성남시청사(철골주차장 포함) 및 시민회관 철거(멸실) • 건 물 1건 14,812.2㎡ 5,989,774천원 - 성남시청사 철거(멸실) 1건 14,812.2㎡ 5,989,774천원 • 건 물 1건 10,726.4㎡ 3,503,744천원 - 철골주차장 철거(멸실) 1건 10,726.4㎡ 3,503,744천원 • 건 물 1건 5,889㎡ 2,073,579천원 - 시민회관 철거 1건 5,889㎡ 2,073,579천원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5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개정 ☐ 주요골자 ○ 청결유지 및 폐기물의 기본계획 등 법조항 정비(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청소행정과	경제환경 위 원 회
6	성남시 생활폐기 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개정 ☐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 관련법 조항 정비(제2조, 제3조, 제4조의 2, 제5조, 제9조, 제9조의 2)	"	"
7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제308호, 2007. 12. 27)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 정비 ☐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시 의견제출 방법으로 구술, 서면 이외에 정보통신망 추가 (제3조제1항) ○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는 조항 신설(제3조제3항)	"	"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8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위반행위가 2이상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는 단서조항 신설(제5조)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개정 □ 주요골자 ○ 음식물류 폐기물 정의, 적용범위 등 관련조항 정비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제12조)	청소행정과	경제환경 위 원 회
9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안이유 ○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3월 31일 개정되어 이에 따른 “성남시도시공원조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부합되게 전부개정 □ 주요골자 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정함.(조례안 제1조) 나.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도시계획”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공원과	”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어의 정의, 주제공원 세분,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개정 라. 공원과 관련부서와의 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공원시설을 10,000㎡이상 공원시설 설치하도록 개정 마. 공원시설 훼손 등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안 24조) 바.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에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자문, 도시녹화 계획의 심의를 포함.(조례안 제25조) 사. 성남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위원장을 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의 수를 13인에서 17인 이내로 함. (조례안 제26조)		
10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수진2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을 2008년 6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수진2동주민센터 부설주차장 ○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395번지 등 5필지 ○ 주차면수 : 72면(지하2층/지상2층)	수정구청 (총무과)	"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1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법인·단체·개인 등) 다. 위탁금액 : 감정평가 금액 라. 위탁관리의 필요성 ○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장 혼잡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 ○ 청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야간에 청소년 우범지대화 예방 ☐ 제안이유 ○ 주택조례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운영상 미흡한점을 보완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개선을 위한 보조금지원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별도 표기 (별표 1) (안 제3조제3항) ○ 30년 국민임대아파트 및 5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게 함 (안 제4조제10호) ○ 노후 급수관 교체(저수조 탱크 이후부터 세대 계량기 전까지) 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게 함(안 제4조제11호) ○ 공동주택 외벽 도장 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게 함(안 제4조제12호) ○ 30년 국민임대아파트 및 50년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정함 (안 제6조제8항)	주택과	도시건설 위 원 회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2	200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 제안이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은행2동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매입비 등을 편성하여 원활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운용방침 기금운용의 변경계획안을 수립,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 운용계획 수입은 당초 수입계획액 56,399,083천원으로 증감 없음. 지출은 당초 지출계획액 451,400천원에서 102,273,689천원 증액된 102,725,089천원으로 2008 년도말 잔액은 당초 424,973,214천원에서 102,273,689 천원 감액된 322,699,525천원임.	관리보상과	도시건설 위 원 회
13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수용토지 및 물건소유자 수용재결 신청에 관한 청원	☐ 청 원 인 : 채창석 등 1,380명 ☐ 소개의원 : 지관근 의원 ☐ 주요내용 ○ 통보8차아파트의 용적률 초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짐 - 2003. 6. 30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았으나 기존 건축물 연면적 용적률이 250%가 초과되어 사업성이 없음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 원 회																
14	200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행정절차 이행으로 재건축 선행 요구 - 재건축 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접시유지 산 38-4번지 용도변경의 행정절차가 이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이 선행되고 공원로의 확장공사가 진행되도록 요망 ○ 우남터널의 행정절차의 이행으로 재건축 선행 - 개착식 공법 공사구간으로 주거지인 아파트 C동의 안전성과 직결된 상황으로 개착식 공법을 시공앵커작업 등의 기공으로 진동, 소음등으로 거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 및 안전 저해 □ 제안이유 ○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 및 계속사업비 등 필수 경비 확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 □ 주요골자 ○ 총 규 모 : 2,335,918,383천원 ○ 일반회계 : 1,278,155,623천원 ○ 특별회계 : 1,057,762,760천원 ○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table> <tr> <td>구 분</td> <td>추경예산안</td> <td>2008당초예산</td> <td>증 감 액</td> </tr> <tr> <td>합 계</td> <td>2,335,918,383</td> <td>2,055,303,229</td> <td>280,615,154</td> </tr> <tr> <td>일반회계</td> <td>1,278,155,623</td> <td>1,152,860,524</td> <td>125,295,099</td> </tr> <tr> <td>특 별 회 계</td> <td>1,057,762,760</td> <td>902,442,705</td> <td>155,320,055</td> </tr> </table>	구 분	추경예산안	2008당초예산	증 감 액	합 계	2,335,918,383	2,055,303,229	280,615,154	일반회계	1,278,155,623	1,152,860,524	125,295,099	특 별 회 계	1,057,762,760	902,442,705	155,320,055	예산법무과	각 상임 위 원 회
구 분	추경예산안	2008당초예산	증 감 액																	
합 계	2,335,918,383	2,055,303,229	280,615,154																	
일반회계	1,278,155,623	1,152,860,524	125,295,099																	
특 별 회 계	1,057,762,760	902,442,705	155,320,055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15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	☐ 제안이유 ○ 2008. 2. 1일자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성남시청소년육성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제17조 (임원의 선임 방법) 제3항에 의거 상임이사 선임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인적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성 명</th><th>생년월일 (연령)</th><th>주 소</th><th>최종 학력</th><th>약 력</th></tr> </thead> <tbody> <tr> <td> 한 창 구 (韓 昌 求)  </td><td>49. 1. 1 (59세)</td><td>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 느티마을 309-803</td><td>연세대 행정대 학원 졸업</td><td>중원구청장 분당구청장 수정구청장 문화복지국장</td></tr> </tbody> </table> 2. 주요 경력사항 ○ 1977.12. 5 ~ : 지방행정주사보 임면(성남시장) ○ 1991. 7. 1 ~ 1991.12.31 : 분당구 사회산업 과장(성남시장) ○ 1992.10. 1 ~ :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 전출(경기도지사) ○ 1995. 8.10 ~ 1995.10.27 :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장 전입(성남시장) ○ 1995.10.27 ~ 1997. 1. 9 : 보건사회국 사회 과장(성남시장) ○ 2002. 1. 1 ~ 2002.10.25 : 복지환경국 문화 예술과장(안양시장) ○ 2003.10.10 ~ 2005. 6. 3 : 문화복지국장, 행정 기획국장(성남시장)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주 소	최종 학력	약 력	한 창 구 (韓 昌 求) 	49. 1. 1 (59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 느티마을 309-803	연세대 행정대 학원 졸업	중원구청장 분당구청장 수정구청장 문화복지국장	체육청소년과	본 회 의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주 소	최종 학력	약 력										
한 창 구 (韓 昌 求) 	49. 1. 1 (59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8 느티마을 309-803	연세대 행정대 학원 졸업	중원구청장 분당구청장 수정구청장 문화복지국장										

제1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관부서	소 관 위원회
		○ 2005. 6. 3~2006. 3. 3 : 수정구청장(성남시장) ○ 2006. 3. 3~2006. 7.28 : 분당구청장(성남시장) ○ 2006. 7.28 ~ 2007. 4. 2 : 보건환경국장(성남시장) ○ 2007. 4. 2 ~ 2008. 2.25 : 중원구청장(성남시장) 3. 주요 상훈사항 ○ 1983. 7. 1 : 도지사 표창(경기도지사) ○ 1988. 9. 1 : 장관 표창(내무부장관) ○ 1994. 3. 2 : 도지사 표창(경기도지사) ○ 1998. 9. 1 : 장관 표창(행정자치부장관) ○ 2004. 12. 27 : 대통령 표창(대통령) 4. 외국 시찰 및 수학 사항 ○ 1994. 10. 31 :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해외연수(영국 등 4개국) ○ 1996. 11. 21 : 사회복지분야 해외연수(일본 등 3개국) ○ 2002. 4. 27 : 벤치마킹 해외연수(일본) ○ 2004. 8. 16 : 해외체육행정 견학 연수(홍콩 등 3개국) ○ 2005. 3. 25 : GIS통합구축사업 벤치마킹(핀란드 등 2개국) ○ 2006. 12. 4 : 그린시티 해외홍보(독일 등 4개국)		
1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 제안이유 ○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바로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 일 시 : 2008. 5. 20(화) 오전 10 : 00	의회사무국	본회의